

■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[별표 11] <신설 2024. 5. 9.>  
 2024년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

관세율표 번호		품명	규격 등	세율 (%)	한계수량
호	소호				
0706		당근·순무·샐러드용 비트(beet root)·선모(仙茅)·셀러리액(celeriac)·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(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)			
0706	10	당근과 순무  1. 당근	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.	0	40,000톤
1212		로커스트콩(locust bean)·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(藻類)·사탕무와 사탕수수(신선한 것·냉장이나 냉동한 것·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),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(核)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[복지 않은 시코리엄티부스 새티범( <i>Cichorium intybus sativum</i> ) 변종의 치커리(chicory) 뿌리를 포함한다]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			
1212	2	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			
1212	21	식용  2. 기타	김(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)	0	700톤

2008		<p>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·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(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</p>			
2008	99	<p>기타</p> <p>5. 조제한 식용 해초류</p>	김	0	125톤